

수원지방법원 2022. 11. 8 선고 2021가단50642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승헌, 김예진

피 고 B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 결 2022. 9. 20.

판 결 선 고 2022. 11. 8.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D(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체결된 2018. 7. 18.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D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01. 2. 15.경 E 주식회사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2001. 11. 20. 3,000,000원을 대출받는 등 E 주식회사에 신용대출금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나. E 주식회사는 2003. 4. 15. F 유한회사에 가.항 기재 채권을 양도하였고, F 유한회사는 2003. 8. 23. 수원지방법원 2002차17327호로 D을 상대로 위 가.항 기재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D은 F 유한회사에 28,571,543원 및 그 중 22,350,110원에 대하여 2003.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2003. 9. 7.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위 채권은 2006. 10. 25. 주식회사 G을 거쳐 2011. 4. 26. H 유한회사에 양도되었고, 그 무렵 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

라. H 유한회사는 2012. 3. 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차전10219호로 D을 상대로 위 다.항 기재 채권의 지급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D은 H 유한회사에 74,766,594원 및 그 중 22,350,110원에 대하여 2012.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2012. 3. 27.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며(이하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2012. 5. 30. D의 대한민국 등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12타채11877호).

마. H 유한회사는 2019. 1. 25.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

바.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7. 5. 사망하였고 당시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인 D, J, C이 있다.

사.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8. 7. 18. 망인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18. 7.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관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아. D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9 지분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반면, 원고에 대한 위 채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채무 등이 있어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1969. 7. 8. 선고 69다362 판결, 1996. 3. 26. 선고 95다20041 판결 등 참조),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6522 판결, 1997. 5. 16. 선고 95다54464 판결,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가 H 유한회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은 것은 소송신탁 목적의 채권양도로서 무효이므로 원고에게는 당사자적격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 후인 2019. 1. 25.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함으로써 위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았을 것인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1. 2. 4.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H 유한회사와 원고 사이의 2019. 1. 25.자 자산양수도계약서 전문 제3항에 ‘매도인은 임시자산관리기간 동안 매수인을 위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본건 채권에 대한 임시자산관리 업무를 제공할 것에 동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H 유한회사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이 원고로 하여금 H 유한회사를 대신하여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는데(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참조),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1년 전에 이 사건 분할협의 사실 등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3. 본안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가 D에 대하여 지급명령에 기한 이 사건 채권을 가지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원금 22,350,110원이 지나치게 많다고 다투는 한편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E 주식회사가 F 유한회사에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2003. 4. 15.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채권의 양도·양수인들이 원금이 22,350,110원임을 전제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음에도 D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채권의 원금은 22,350,11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D의 카드 발급일인 2001. 2. 15.로부터 약 2년 6개월 후인 2003. 9. 7. F 유한회사의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2012. 3. 27. H 유한회사의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로써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해행위 여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함으로써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 D의 사해의사는 인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등을 반영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정하게 되고(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 참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도 위와 같은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피고는, D이 2012. 11. 6. 망인으로부터 시가 26,8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증여받았고, 2017. 3. 30. 위 차량의 매각대금 5,930,000원을 D의 처 K 명의로 증여받았는바 위 수증액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 상속분의 가액 17,333,333원을 초과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를 D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차량이 망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던 이상 D과 처 K가 위 차량을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D에게 위 차량을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에 2017. 3. 31.자 수출말소가 등록되어 있는 사실, 2017. 3. 30. K의 계좌에 5,930,000원이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실만으로는 망인이 D에게 위 5,930,000원을 증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K에게 2016. 11. 8. 및 2016. 11. 9. 합계 40,200,000원을 송금하여 D에 대하여 40,2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고, 위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 소유의 2/9 지분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D이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9 지분을 채권자들 가운데 한사람인 피고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므로(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의 상속지분 2/9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지원

부동산 목록

1. 경기도 오산시 대 66㎡

2. 경기도 오산시

[도로명주소] 경기도 오산시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점포

1층 42.31㎡, 2층, 3층 각 44.69㎡ 각.

